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되는 경우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유희항만 인근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조문 순서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 현행 대통령령의 조문은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순서의 조정이 필요함.
-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현행 대통령령 제11조를 제9조로,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현행 제9조를 제10조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이후 지정 고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함. 위 조문을 인용하는 후속 조문(제13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함.
- 조문 순서 조정을 통해 법령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음.

라. 시행일(부칙)

- 개정 법률(법률 제17877호)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1년 7월 6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1. 의결주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877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아울러, 법령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조문 순서를 일부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안 제6조의2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7868호)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을 위한 공용수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개정(법률 제17877호)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행정규제 : 규제 신설 없음

- 사전 의견청취 수단을 공고와 공청회로 나누어 규정하고, 공고의 경우 20일 이상, 공청회 개최계획의 경우 14일 전까지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일만에 알리도록 하며, 개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이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지구와 개발계획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면적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종전 제9조제1호))

- 현행 법령은 유희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 이상인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별도 면적기준을 두지 않음.
- 유희항만시설을 활용하려는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유희항만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이며, 유희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어 대상 지역의 선정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완화함.
- 이를 통해 10만㎡ 미만의 유희항만시설이더라도 선정 타당성이 인정

- 2 -

대통령령 제 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안의 개요
-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5 -

- 3 -

- 4 -

③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개발계획”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지역 내에서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물동량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어 해
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제13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판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방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보,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생 략)	1. ----- 개발계획-----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제외) -----

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대상 지역 내에서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물동량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생 략)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판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 -- 제11조 ----- ----- ----- ----- ----- ---

< 외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연 락 처	(044) 200 - 5757